

예수대학교 동문회 회칙

2025. 5. 30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예수대학교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제4조(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모교발전을 위한 자금조성사업
4.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예수대학교 학부 졸업자(예수대학교 전신 포함)와 예수대학교 대학원 수료이상자로 한다(2025.5.30).
2.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원하는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회비의 부담 및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②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8조 1항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9조(임원과 임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0명 이내
3. 총무 : 2명
4. 서기 : 2명
5. 회계 : 2명
6. 감사 :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일정액의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임원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11조(상임이사) 본회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2025.5.30).

1. 상임이사는 임원 중 회장, 제1부회장,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1인, 간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① 본회에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모교의 전 . 현직 학 . 총장과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2025.5.30.).

제13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부회장의 유고시는 졸업년도 순위로 한다.

제15조 (총무)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실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서기)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한다.

제17조(회계) 회비 및 기금의 수입, 지출 상황을 관리한다.

제18조(감사)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 한다. 단, 필요시 추가 감사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간사)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1. 사무간사는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2025.5.30).
2. 사무간사는 회장의 감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3. 사무간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2절 선거

제20조(회장선출) 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2025.5.30).

제21조(부회장선출)

- ① 제1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2025.5.30).
- ② 제2부회장은 10명 이내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2025.5.30).

제22조(총무,서기,회계선출) 총무, 서기, 회계는 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2025.5.30).

제23조(감사)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4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2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개교기념일(6월1일) 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6조(구성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5.5.30).

제27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의 2/3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개최는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2025.5.30).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2025.5.30).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총무, 회계, 서기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2025.5.30).

1. 회장, 부회장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2. 회비, 입회비, 이사회비 책정 및 예산안 심의
3.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4.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안 심의
5. 회무 운영방법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총무, 서기, 회계 선임
7. 사무간사의 임명 동의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2025.5.30).

제29조의 1(이사회)(2025.5.30. 신설).

- ① 이사회는 제10조에 명시된 자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의 2(상임이사회) (2025.5.30. 신설).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29조의 1항과 관련된 사항의 사전 검토 등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30조(수 입)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한다.(2025.5.30.).

1. 입회비와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2.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3.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정한다.
4. 이사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단, 추경예산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2025.5.30)

제3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6월에서 익년 5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위원회)

- ① 본회에서 중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회장 소관 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 본 회칙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모교의 교명 변경에 따른 동문회의 명칭) 추후 동문회의 명칭은 모교의 교명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